

1. 개정이유

외국인 보호시설 내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특별계호 절차·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29조의2 부터 제29조의6 까지)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보호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내부통제 창구를 마련함

나.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특별계호 시에는 반드시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별계호 최대기간을 72시간(72시간 범위에서 1회 연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별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특별계호 할 수 없도록 함

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40조의4)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특별계호 해제를 명하여야 함

라.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3조의12까지)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며,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보호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사무관
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 (다만, 출입국관리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주사보로 한다)

제29조의3(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조사
2. 인권보호보고서 및 제도개선안 보고
3. 인권교육
4. 그 밖에 청장등이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4(인권침해의 신고와 처리 절차)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청장등은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외국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의5(불이익처우 금지) 보호외국인은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6(인권침해 신고절차 게시 등) ① 청장등은 인권침해 신고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업무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격리 보호)”를 “(특별계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이 따로”를 “제40조의3제1항에서”로, “독방에 격리 보호”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여 계호(이하 “특별계호”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격리 보호”를 “특별계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특별계호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징계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특별계호 절차) ①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특별계호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특별계호를 해제해야 한다.

② 청장등이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된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특별계호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특별계호 사유와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특별계호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이 특별계호를 한 때에는 그 내용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할 때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또는 휴대용 영상장비를 통해 그 과정을 녹화하여 해당 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특별계호 기간)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호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계속하여 특별계호할 필요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계호가 종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특별계호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계호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40조의4(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특별계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청장등은 제3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특별계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특별계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을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1항”으로, “강제력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을 “강제력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긴급할 때에는”을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4항”을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4항”으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을 “보호장비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할 때”를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보호외국인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제43조의2제1호(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43조의2제2호

3. 제43조의2제3호(별표 1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3조의2제5호

④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안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의사는 그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 청장등이 지명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담당공무원이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5. 보호의자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요건)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보호대: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의뢰, 보호장소 변경, 외출, 강제퇴거 집행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 밖의 장소로 보호외국인을 이동시키는 경우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발목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히 하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보호의자: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자해를 하였거나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경우

제43조의4(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7과 같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의5(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손수갑은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 한다.
2.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9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③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의6(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1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하며, 보호외국인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의7(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는 별표 12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한발목보호장비는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별표 13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제43조의8(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4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제43조의9(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는 별표 15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② 보호의자는 제43조의12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6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의10(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는 다른 보호장비와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의11(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보호장비의 종류
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시간·방법

제43조의12(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 착용 보호외국인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담당의사 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자는 제43조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또는 청장등이 지명

하는 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7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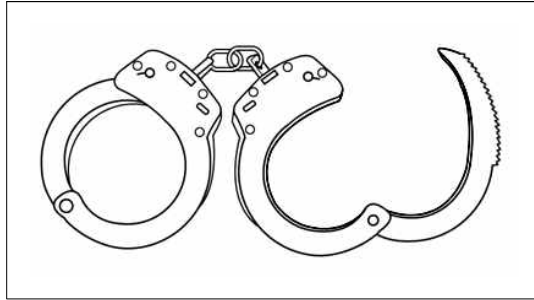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보호장비의 규격 (제43조의4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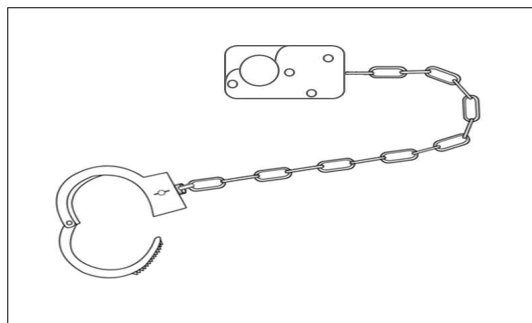
1. 수갑

가. 양손수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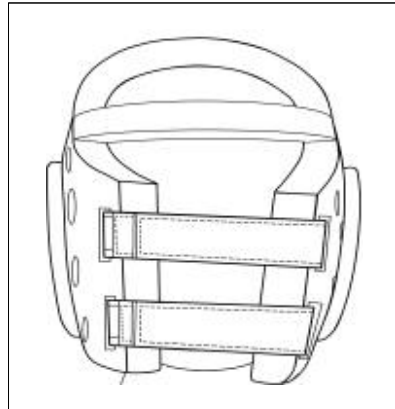
재 질	잠 금 장 치	연결고리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손목 크기
· 스테인리스스틸 · 두랄루민 · 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2.5cm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	최대: 20cm 이상 최소: 16cm 이상	지름: 5cm

나. 한손수갑



재 질	형 태	연결고리	최소사용 손목 크기	구 성
· 스테인리스스틸 · 두랄루민 · 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5cm	· 수갑 1쪽 · 연결고리 · 잠금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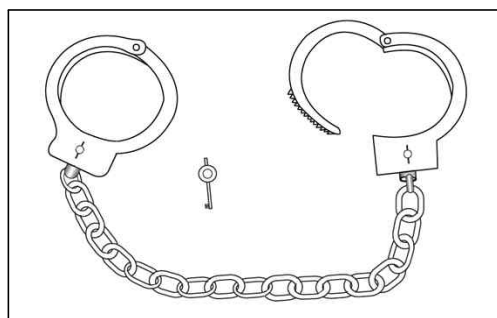
2. 머리보호장비



재 질	형 태	규 격	색 상	구 성
폴리 우레탄	헬멧	머리둘레: 55cm ~ 65cm 두께: 1.5cm	베이지	· 후두부 중앙 고정장치 (2개 조임밴드) · 지름 3cm 미만의 환기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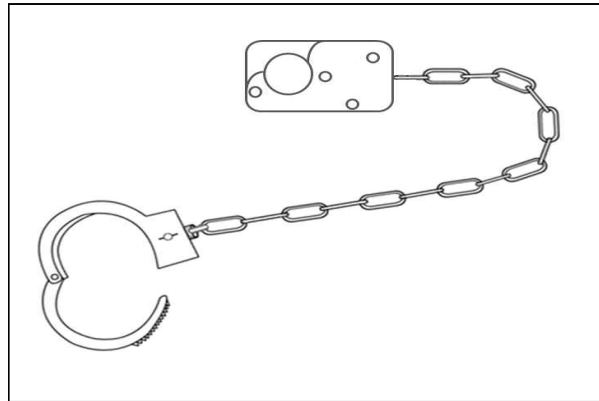
3. 발목보호장비

가. 양발목보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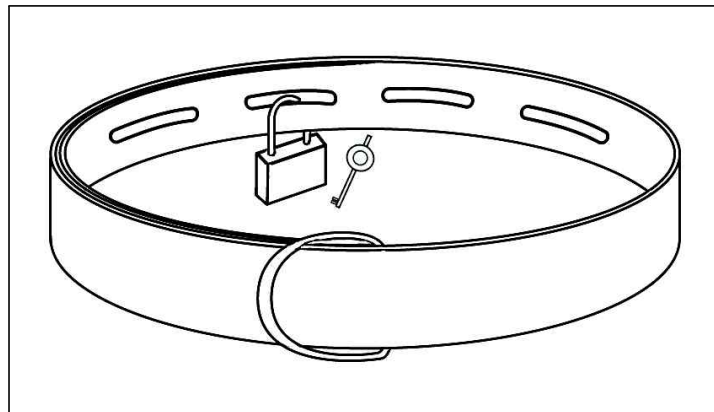
재 질	잠금장치	연결고리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발목 크기
· 스테인리스스틸 · 두랄루민 · 탄소강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35cm 미만의 고리규격	최대: 59cm 이상 최소: 53cm 이상	지름: 7cm

나. 한발목보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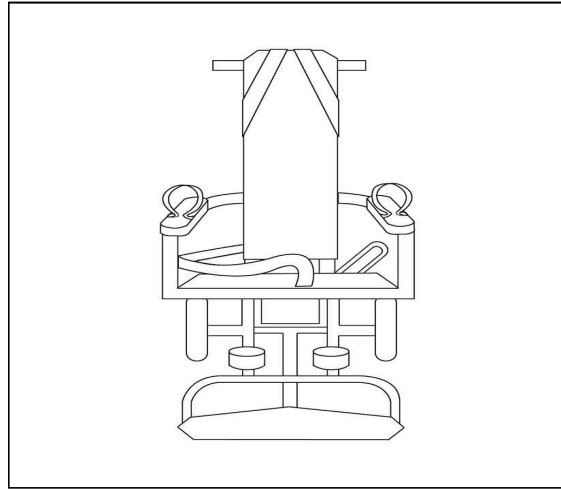
재 질	잠금장치	연결부위	최소사용 발목 크기	구 성
스테인리스스틸 또는 두랄루민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길이 80cm 미만의 고리규격	지름: 7cm	· 수갑 1쪽 · 연결고리 · 잠금장치

4. 보호대



재 질	형 태	규 격	구 성
· 벨트: 폴리프로필렌 · 링: 스테인리스스틸	벨크로접착 띠	140cm×5cm	· 벨크로접착 띠가 부착된 중앙 분리형 벨트 · D형 고리 · 안전 자물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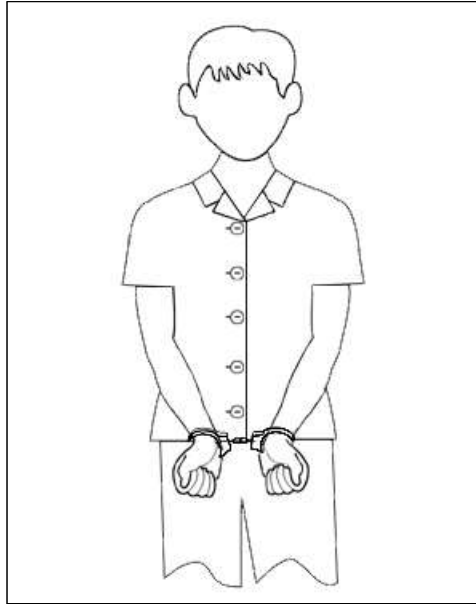
5. 보호의자



형 태	규 격	중량	구 성
6개의 단방향조절식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신고정형 의자	70cm×117cm×112cm (넓이, 깊이, 높이)	40Kg 이내	· 의자: 38cm×51cm (넓이, 깊이) · 등받이: 30cm×81cm (넓이, 높이) · 팔걸이: 9cm×43cm (넓이, 길이) · 어깨, 배, 다리, 팔 구속벨트 및 잠금장치

[별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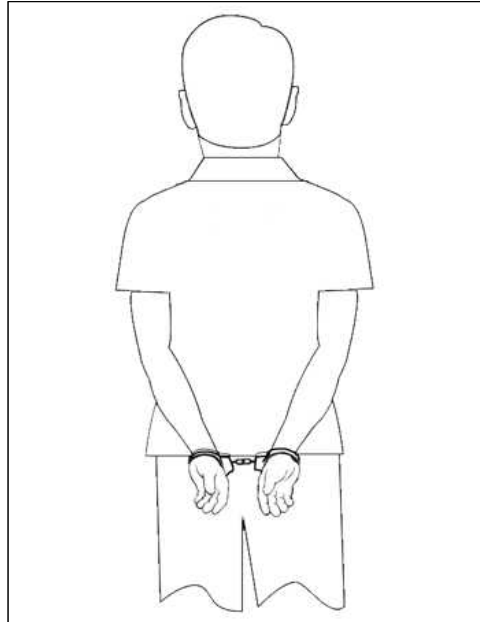
수갑 사용방법 1 (제43조의5제1항제1호 관련)



앞으로 사용

[별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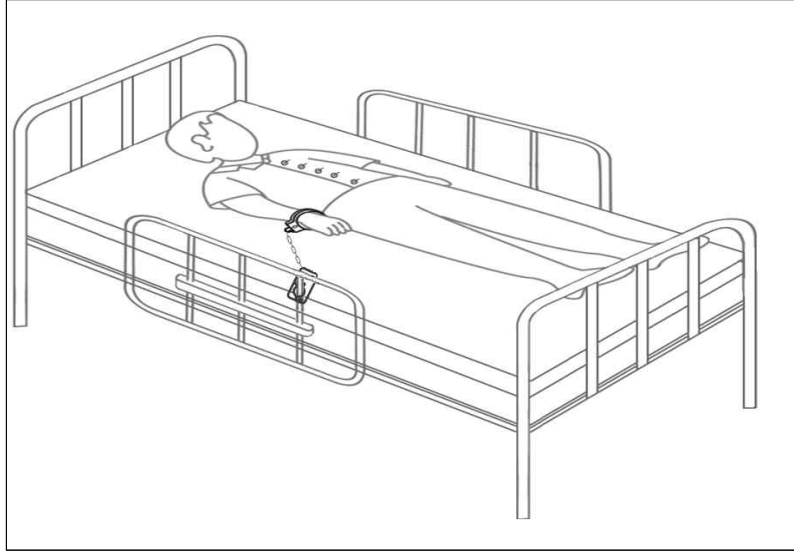
수갑 사용방법 2(제43조의5제1항제2호 관련)



뒤로 사용

[별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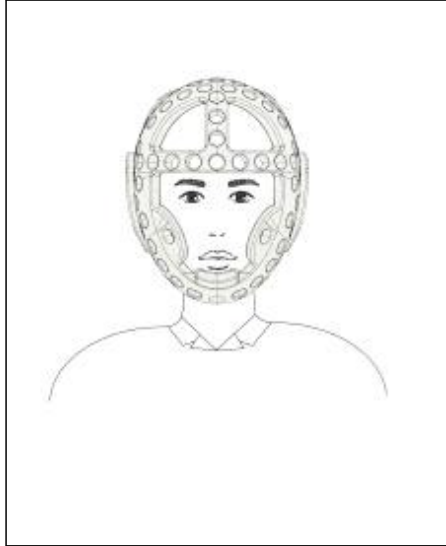
수갑 사용방법 3(제43조의5제1항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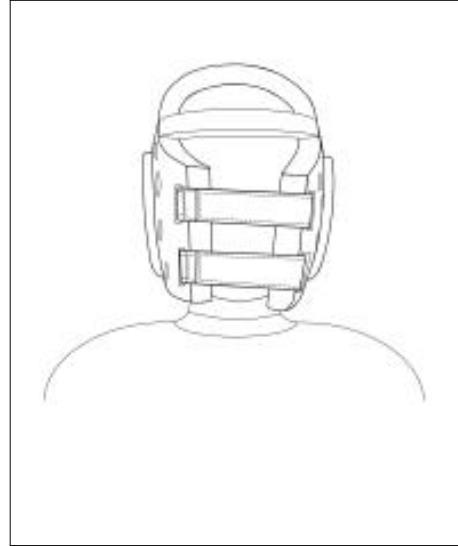
한손수갑

[별표 11]

머리보호장비 사용방법 (제43조의6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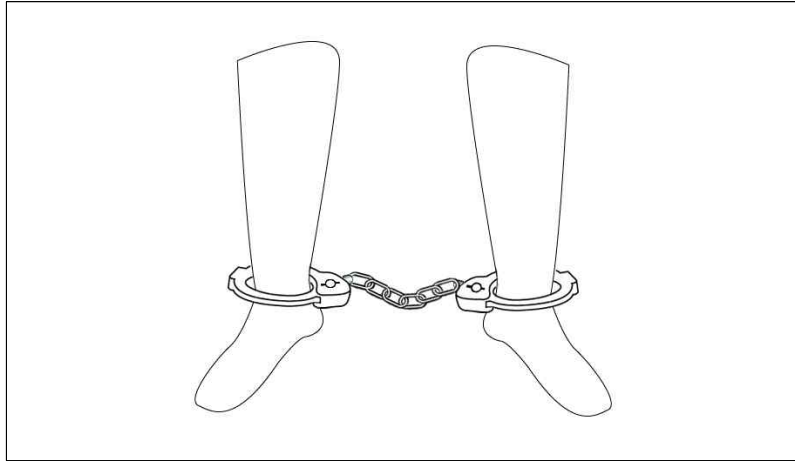
(앞면)



(뒷면)

[별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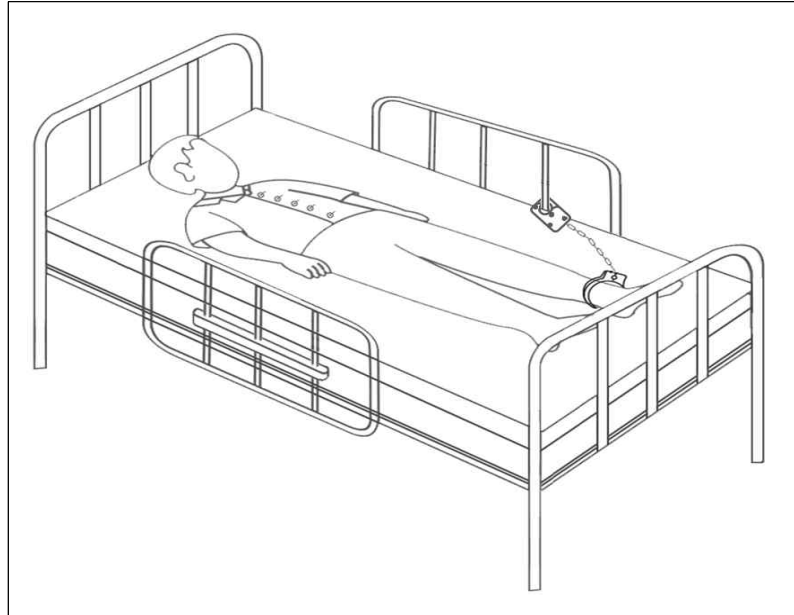
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 1 (제43조의7제1호 관련)



양발목보호장비

[별표 13]

발목보호장비 사용방법 2(제43조의7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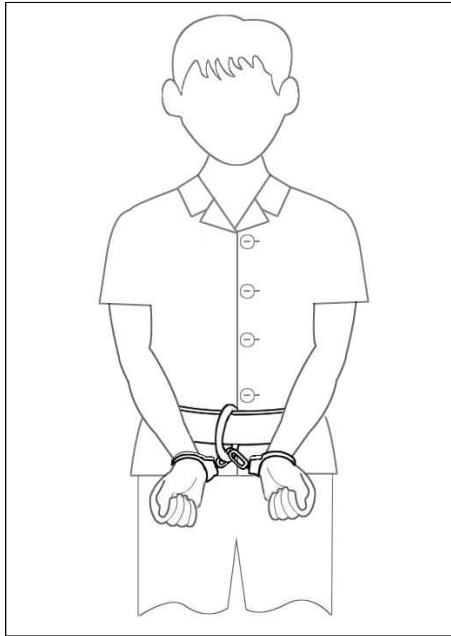


한발목보호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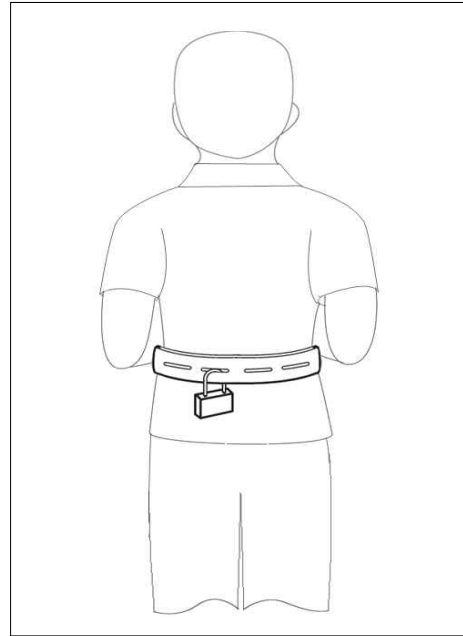
[별표 14]

보호대 사용방법 (제43조의8 관련)

보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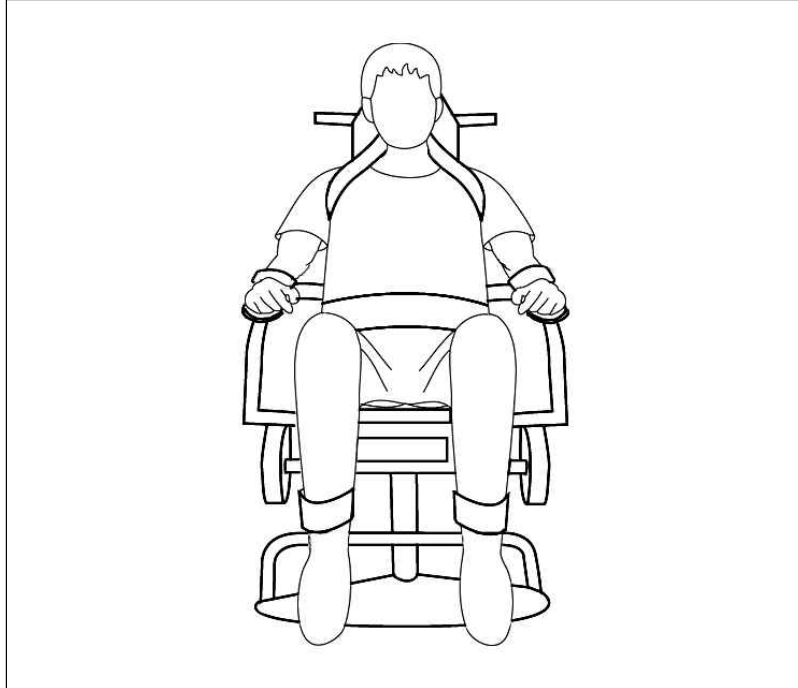
(앞면)



(뒷면)

[별표 15]

보호의자 사용방법 (제43조의9제1항 관련)



전신고정형 보호의자

특별계호신청서

			담 당	계 장	과 장	소 장
1.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						
기록번호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비 고	

2. 특별계호 사유

3. 특별계호 기간

4. 특별계호 방법

5. 기타사항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계호를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담당공무원 (인)

특별계호지시서

1. 특별계호 대상 보호외국인

기록번호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비 고

2. 특별계호 사유

3. 특별계호 기간

4. 특별계호 방법

5. 기타사항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별계호를 허가합니다.

20 .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인)

특별계호 통고서 (Notification of Special Custody)

특별계호 대상자 (Subject of Special Custody)	성명(Full Name)
	성별(Gender)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Nationality)

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계호 됩니다. 귀하는 청장등에게 특별계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제40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You are ordered to be in special custody as specified below, pursuant to the Article 40 of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You may make a statement of opinion regarding the order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or detention center.

특별계호 사유 (Reasons for Special Custody)	1. 도주(Flee)	[]
	2. 난동(Disturbance)	[]
	3. 기물파손(Vandalism)	[]
	4. 상호다툼(Brawl)	[]
	5. 타인위협(Threatening)	[]
	6. 위해물질반입기도(Attempt to carry toxic substances)	[]
	7. 자해(Self-harm)	[]
	8. 지시불응(Disobedience to orders)	[]
	9. 기타(Others)	[]
특별계호 장소 (Place of Special Custody)		
특별계호 기간 (Period of Special Custody)	부터 (from)	까지 (to)
비고 (Remarks)		

위 특별계호 사유와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acknowledge that I have been informed of the reasons for special custody described above and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make a statement of opinion.

특별계호대상자 : (서명 또는 인)
(Subject of Special Custody) :

발부일자(처분일자) : 년 월 일

Date : (year) (month) (day)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

집행공무원 : (서명 또는 인)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WRITTEN OBJECTION AGAINST SPECIAL CUSTODY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3일 003days
신청인 Applicant	성 명 Full Name		
	성 별 [] 남 [] 여 Gender [] M []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나는 년 월 일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장의 특별계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의4에 따라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합니다.

I hereby file an objection to being in special custody, as ordered on _____. _____. _____. by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 Detention Center), by submitting the supporting documents attached hereto pursuant to Article 40 (4) of the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신청인
Applican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법무부장관
TO: Minister of Justice

귀하

첨부서류	소명자료 Attachment: Supporting documents
------	--

특별계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신청인 Applicant	성 명 Full Name
	성 별 [] 남 [] 여 Gender [] M []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위 사람이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의4에 따라 년 월 일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 한다.

주문 (Text in written decision)	
사실 및 이유 (Relevant facts and reasons)	
적용 법조 (Applicable provisions)	
비 고 (Remarks)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9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u> <u>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u> <u>호와 보호과정에서의 적법절차</u> <u>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u> <u>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u> <u>정해야 한다.</u> <u>② 인권보호관은 아래 기준에</u> <u>따라 지정한다.</u> <u>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u> <u>우 : 출입국관리사무관</u> <u>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u> <u>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u> <u>(다만, 출입국관리주사가 없는</u> <u>경우에는 출입국관리주사보로</u> <u>한다)</u>
<u><신 설></u>	<u>제29조의3(인권보호관의 직무) 인</u> <u>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u> <u>를 수행한다.</u> <u>1.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조사</u> <u>2. 인권보호보고서 및 제도개선</u> <u>안 보고</u> <u>3. 인권교육</u> <u>4. 그 밖에 청장등이 인권보호</u> <u>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신 설>

<신 설>

하는 사항

제29조의4(인권침해의 신고와 처리 절차)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고,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청장등은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권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외국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의5(불이익처우 금지) 보호 외국인은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신 설>

제40조(격리 보호)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될 때

6. 정신질환·알콜중독·마약중독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이 의심될 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건 경위와 격리 보호의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

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의6(인권침해 신고절차 게시 등) ① 청장등은 인권침해 신고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업무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0조(특별계호) ① -----

----- 제40조의3제1항에서 -----
--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여 계호(이하 “특별계호”라고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

----- 특별계호-----

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격리 보호하고,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삭 제>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특별계호는 보호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징계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의2(특별계호 절차) ①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특별계호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특별

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특별계호를 해제해야 한다.

② 청장등이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된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특별계호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특별계호 사유와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특별계호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이 특별계호를 한 때에는 그 내용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할 때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또는 휴대용 영상장비를 통해 그 과정을 녹화하여 해당 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신 설>

<신 설>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의3(특별계호 기간)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호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계속하여 특별계호할 필요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계호가 종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특별계호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계호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4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40조의4(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제42조(강제력의 행사) 법 제56조
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청장
등의 명령 없이는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
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
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특별계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앞서 필요하면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청장등은 제3항의 경우에 법
무부장관의 특별계호해제 결정
이 있으면 지체 없이 특별계호
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2조(강제력의 행사) ① 담당공
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1항--- 강제력을 -
---. ---- 청장등으로부터 명
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
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

<신 설>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법 제56조의4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捕繩)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

③ 보호장비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한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곧 살펴보아야 한다.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4항---- 보호장비를 -----, ----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

②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보호외국인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그 요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즉시 해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제43조의2제1호(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43조의2제2호

3. 제43조의2제3호(별표 1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4. 제43조의2제5호

④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 안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담당의사는 그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 청장등이 지명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담당공무원이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

<신 설>

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5. 보호의자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요건)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보호대: 법 제56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의뢰, 보호장소 변경, 외출, 강제퇴거 집행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 밖의 장소로 보호외국인을 이동시키는 경우
2. 머리보호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발목보호장비: 법 제56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히 하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보호의자: 다른 보호장비로는

<신 설>

<신 설>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자해를 하였거나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경우

제43조의4(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7과 같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3조의5(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손수갑은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 한다.

2.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9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신 설>

<신 설>

<신 설>

0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③ 수갑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의6(머리보호장비의 사용 방법)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11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하며, 보호외국인이 머리보호장비를 입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의7(발목보호장비의 사용 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는 별표 12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2. 한발목보호장비는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별표 13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제43조의8(보호대의 사용방법) 보

<신 설>

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4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제43조의9(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는 별표 15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② 보호의자는 제43조의12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6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3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43조의10(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는 다른 보호장비와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43조의11(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신 설>

록해야 한다.

1. 보호장비의 종류

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 · 시간
· 방법

제43조의12(보호장비 사용의 중

단)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
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청장등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 착용
보호외국인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
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담당의사 또는 청장등이 지
명하는 자는 제43조제5항에 따
른 확인 결과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

고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 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